



문 의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과 장 양재석 사무관 박성수	042-481-8321 042-481-8243
 		2021년 6월 22일(화) 오전 9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 국내기업, 코로나19 백신에 특화된 특허 16건 출원 -
- 대한민국의 지구촌 백신 생산 중심지(hub)화, 특허 신속심사로 뒷받침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6월 23일(수)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과 관련된 백신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우선 처리하여 백신 기업들의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이번에 지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①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과 ②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붙임】
 - 최근 특허청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령(6.23 시행)을 개정하여,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대상을 직권으로 지정·공고하는 제도를 추진한 바 있다.

○ 이번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생산 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지정은 새롭게 도입된 우선심사 직권 지정 제도를 활용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 [개정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제2항 제2호]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 이번 조치로, 향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심사를 받으면 약 2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심사와 비교할 때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유바이오로직스 등

** (평균 심사착수 기간) 우선심사 : 2.2개월 / 일반심사 : 13.7개월 (20년 기준)

○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국내기업의 코로나19 백신에 특화된 특허출원은 16건 (21.5월말 기준)으로 확인되며, 향후 정부 지원 등으로 국내 백신 개발이 가속화되면 신청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지원을 위해 백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하여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의 한국 내 생산과 함께 연구 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내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재난 관련출원의 우선심사 지정 관련 공고문 1부. 끝

특허청 공고 제2021-182호

'21.6.23. 시행되는 「특허법」 제61조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실용신안법」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호다목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우선심사신청 대상으로 지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특허청장

코로나19 백신 관련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대상 지정

우선심사 대상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①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②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생산기술과 관련된 출원 * 예) 임상 또는 허가 관련 절차 진행 중
신청가능한 기간	'21.6.23.~'22.6.22.에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 ※ 1년 한시적 시행 후 연장여부 재검토 예정	
우선심사 신청료	특허출원 20만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10만원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8호 및 제3조제7호	
제출할 서류 (입증할 내용)	○ 공통 제출서류 :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심사신청설명서* * 우선심사 고시 제4조제5호다목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적은 설명서	
	㉠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입증서류 예)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 출원발명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명시된 서류	○ 국내 생산(준비)여부 입증서류 예) 공장등록증명서, 임상·허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면 인정), 위탁생산계약서 사본 등